

서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16451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박호현, 김창훈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권
변 론 종 결 2020. 5. 22.
판 결 선 고 2020. 6.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9. 4.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2. 피고와 사이에 상업용 소방기기 등 자재 공급과 수급을 목적으로 특판점계약을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C)에 관한 특판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주된 계약내용 : 피고는 K급 소화장치를 원고에게 공급하며 원고는 이를 구매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리점 보증금 1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대리점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함,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해지할 경우 3개월 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경우에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함, 제품 가격은 싱글(1set 기준) 1EA 기준 170만 원, 더블(1set 기준) 1EA 기준 300만 원으로 정하고 설치비, 부가가치세 별도임].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보증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 대표 D은 2018. 8. 30.경 피고에게 '2018. 6. 20.까지 설치비 4,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맞고 여기서 4. 25. 피고에게로 입금한 가스차단기 값이 환불 안돼서 미지급금 4,950,000원에서 48만 원을 공제하면 4,470,000원이며 2018. 4. 2. 입금한 금액 1,980,000원은 2018. 3. 16. 발행한 세금계산서 입금한 금액임. 그리고 특판거래 만기일인 2018. 9. 12. 보증금 일억 원에서 4,470,000원을 공제하고 반환 요청한다'는 취지의 '원고와 피고 거래내역 정산서'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2018. 9. 11. 기간 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4,47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95,53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게 230만 원 상당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C) 40개를 공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9,200만 원 상당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353만 원만 남아 있다.

2) 판단

피고는 을 제11호증을 근거로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게 230만 원 상당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C) 40개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같은 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물건은 소화장치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맡겨두었던 시가 5~6만 원 상당의 소화기(C)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공문에 원고가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8년 10월 05일

(주) B 사무실 → A 로 소화기(C) 40개 출고
A D 대표님 B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

피고는 위 을 제1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소화기(C)가 230만 원 상당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C)를 의미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화장치 40대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 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9,200만 원 상당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C) 40대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주로 취급하는 상품은 소화기와 상업용자동소화장치인데 두 제품 모두 C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소화기와 단가가 높은 소화장치와의 구분을 위하여 소화기의 경우에는 C 소화기, 또는 K급 소화기 등 '소화기'를 표시하여 지칭한다. 이에 소화장치를 소화기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을 제11호증에 '소화기(C)'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괄호 안에 C 기재가 있다는 이유로 '소화기(C)'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화장치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을 제11호증에는 '소화기(C) 40개 출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2018. 8. 30. 보냈는바, 그 이후인 2018. 10.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를 하면서 보증금에서 물품대금을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을 제11호증과 같은 출고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 물품대금 등의 정산 관련 합의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을 제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30만 원 상당의 소화장치 40대를 공급한 사실과 그 물품대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4개월여가 경과한 2019. 1. 26.경부터 원고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를 다투기 시작하였다.

④ 원고는 2017. 11. 14. 원고 소유 시가 5 ~ 6만 원 상당의 C 소화기 50대를 피고에게 보관시켜 놓았는데, 2018. 10. 5. 전에 위 소화기를 모두 회수하여 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반면,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같은 2018. 10. 5.자 출고확인서가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8. 피고로부터 C 상업용 소화장치 2대, 소화기 10개를 받으면서 작성한 출고확인서에 '위 내역 출고 후 피고에 원고에서 추가로 맡겨놓은 수량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8. 10. 5. 피고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시켜 놓았던 원고 소유의 C 소화기들 중 40개인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95,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8.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일인 2019. 4.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실